

사단법인 해피맘

정관

(20. 7. 21.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해피맘**(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음주폭력 등 모든 폭력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소비사회를 구현하며 이를 선양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며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 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사업
- ② 다문화가정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등의 안전한 사회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③ 폭력피해근절, 사회안전을 위한 교육, 교양 강좌 및 서적, 문화 콘텐츠 제작 보급사업
- ④ 사회안전을 위한 국내외 시민단체 및 정부기관 연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
- ⑤ 폭력 근절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 사업
- ⑥ 안전한식품, 안전한 제품 등의 보급·정착을 위한 소비자권익보호사업
- ⑦ 기타 본 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일체

제5조(지회 및 지부설치)

회원의 필요에 따라 외국이나 국내 대도시, 군소 지자체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부, 지회(센터)와 관련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그리고 대의원으로 나눈다.

- ① 일반회원은 본 회에 찬동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내거나 참여단체를 통해 회원 되기를 신청한 자로 한다.
- ② 특별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한 후, 본 회 재정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하는 특별회원가입의 절차를 밟은 자로 한다.
- ③ 대의원은 본부이사, 지부장, 지회장(센터장), 지부장 및 지회장(센터장)이 추천한 자(5인 이내), 그리고 특별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각 지부와 지회의 총회를 통하여 본회 사업의 추진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본부 총회(이하 '총회' 라 한다)에는 일반회원이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의결권도 없다.
- ②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 ③ 일반회원은 일반 회비 납부 또는 회비 대신 봉사하는 활동가
- ④ 특별회원은 년 회비와 본인이 희망하여 기여하고자 약속한 부담금의 납부
- ⑤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 ①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본회의 회장이며 대외적으로는 상임대표라 칭함) : 1명
- ② 이사 : 5인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상임이사로 이사장(회장)과 사무총장 2인을 포함하여 정수로 둔다.
- ③ 감사 : 2인 이하
- ④ 이사장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 고문, 공동대표(참여 단체들의 대표), 부회장 등 명예직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도위원 약간 명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과 그 장을 임명한다. 단, 분과위원 등의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 중 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상정하여 추인 선출 방식으로 선임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 ②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상임대표)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나 별도로 이사회의 의장을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도 있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일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 중에서 회장은 사무총장을 선임하여 사무국 업무를 총괄케 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호. 본 회 재산과 회계감사
 - 2호.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
 - 3호. 1 2호 감사결과 잘못되었거나 옳지 않은 일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나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4호. 제 3호 보고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다.
 - 5호.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지명자가 없을 경우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직원)

본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직원을 이사회 승인을 얻어 본 회 회장이 임명한다.

□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과 구분)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을 뽑고 해임하는 일
- ② 정관을 바꾸거나 해산에 관한 일
- ③ 사업계획이나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일
- ④ 기본재산의 처분 및 획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일
- ⑤ 기타 본회를 운영하는데 중요하다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일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와 각 지부 및 지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일상 업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 집행이사회와 운영이사회를 둘 수 있다. 단 집행이사회 의 구성과 직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호.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2호 <2015. 3. 25. 삭제>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꺼림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회의에 부칠 사항 중 가벼운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일을 결정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운영에 관한 일
- ② 총회의 위임을 받아 규정을 고치거나 만드는 일
- ③ 권위된 임원 선출 및 이사 이외의 명예직 또는 산하 간부 직원을 선출하는 일
- ④ 총회나 각 회의에서 위임받은 일
- ⑤ 기타 회장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

제28조(회의록)

총회 회의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회원들이 열람을 할 수 있게 사무국에 비치한다.

□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 ① 본회 수입금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수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재산 및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 ② 본회 수입금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본회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구성된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한다.

제32조(회계년도)

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본회에 상근하는 임원은 본 회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본회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산)

본회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기부금실적의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9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아래 본부 사무국과 각 지부 지회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법정 등록 이사회 선임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8 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본회는 다음 사항이 일어나면 해산한다.

①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경우

1호. 해산결의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호.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2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회계사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에 따르며, 법인사무는 민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2015. 3. 25. 전부개정>

사단법인 해피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1, 401호(서초동, 삼우빌딩)
대표이사 조 태 임

정관 변경사항

- 2013.8.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2018.1.5. 명칭변경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 2019.2.20. 법인 목적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